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지자체에 교통편의 제공 대책 등 수립·시행 의무 부여〉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39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주철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3.
3. 회부연월일 : 2025.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대책의 수립·시행 주체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문제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공립 유료시설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이에, 교통편의 제공 대책과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의 수립·시행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함으로써, 선거권행사가 한층 더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第6條(選舉權行使의 보장) ① (생략)	第6條(選舉權行使의 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u>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u> 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u> ----- ----- ----- ----- ----- -----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제6조제1항),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제7조),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제8조).¹⁾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에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

1)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등”이라 한다)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제6조제2항).

《교통불편지역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현황》

선거명		교통편의 제공 읍면동수	교통편의 제공현황	
			노 선 수	차량(선박)수
제20대 대통령선거	합 계	1,093	2,208	1,570
	충청권	213	522	343
	호남권	334	822	497
	영남권	439	695	567
	기 타	107	169	163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합 계	1,074	2,153	1,550
	충청권	200	502	341
	호남권	329	796	486
	영남권	441	697	579
	기 타	104	158	14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합 계	1,089	2,144	1,678
	충청권	214	499	336
	호남권	369	795	541
	영남권	420	704	634
	기 타	86	146	14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증장애인 이동차량 지원현황》

선거명 구 분		제20대 대선 (22. 3. 9.)		제8회 지선 (22. 6. 1.)		제22대 국선 (24. 4. 10.)	
		차량	활동보조인	차량	활동보조인	차량	활동보조인
장애인 이동차량 및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	선거일	824대	1,152명	811대	1,172명	891대	1,089명
	사전투표기간	1,159대	1,621명	1,180대	1,172명	1,378대	1,792명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선거인의 투표참여 촉진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주체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할 경우 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안은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투표참여 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거권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현행법상 선거권 등 국민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 주체를 규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의무 주체로 명시하는 경우(현행법 제6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26조²⁾ 등)도 있는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면서 교통편의 제공 등 구체적 실행 의무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현행법 제6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³⁾ 등)도 있음.

2) 「장애인복지법」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계도)

따라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투표참여 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할 경우 교통편의 제공이나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의 면제·할인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선거관리위원회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통해 선거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여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약자 등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하고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 수립·시행의 주체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소환투표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소환투표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국가 사무인 선거관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과정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그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특정 정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 사항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정당 지지도 등에 유·불리를 초래하는 등 구체적 계획·제공 내용 등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제도 변경의 장·단점과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